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과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함(안 제91조의26 신설 등).
-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136조제6항).

II. 검토의견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안 제91조의26)

안 제91조의26은 국민성장펀드 조성 활성화를 위해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2030년 12월 31일까지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특례(제1항)와 소득공제 특례(제2항)를 신설

하려는 것임.

그러나, 안 제91조의26제5항 및 제6항에서는 “투자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지분증권을 양도·환매하는 경우에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안에 따른 과세특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3년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과세특례의 요건으로 “3년 이상 투자”할 것을 명확히 함.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91조의26(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제3항에 따른 <u>전용저축</u> 에 가입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수익증권 또는 지분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에 <u>투자하여 발생하는</u> 배당소득(투자일로부터 5년 이내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91조의28(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 ----- ----- <u>전용계좌</u> <u>를 이용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이하 이 조에서 “전용저축”이라 한다)</u> ----- ----- ---- <u>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 이에 따른</u> ----- ----- ----- ----- ----- ----- -----.
1.·2. (생략)	1.·2. (생략)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② -----

2030년 12월 31일까지 제3항에 따른 <u>전용저축</u>에 가입하고 국민성장집합투 자기구의 증권등에 <u>투자하는</u> 경우에 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서 다음 표에 <u>규정된</u> 금액을 공제(해 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 로 한다)한다. 다만, 타인 소유의 증 권등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표 생략) ③ ~ ⑫ (생 략)	----- <u>전용저축</u>----- ----- ----- <u>3년 이상 투자하는</u>----- ----- ----- <u>다른 공제액</u>----- ----- ----- . ----- ----- ----- . (표 생략) ③ ~ ⑫ (생 략)
--	--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한 체계·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법률 제 2154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26. 4. 21. 공포·시행)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 번호를 수정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 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